#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00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강일·주호영·김용태

김태호 · 민병덕 · 박홍근

서명옥 · 신성범 · 이상식

허성무ㆍ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에 대해서는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아동들이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그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그 감독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게 위임함(안 제4조및 제5조).
- 다.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함(안 제6조).
- 라. 출생등록신청은 외국인아동의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출생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등록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이 없는 경우 시·읍·면의 장이 등록 의무자에게 최고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하고,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본인 등이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사.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를 금지함(안 제16조).
- 아.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

9조까지).

자. 출생등록사건에 관하여 외국인아동 본인 등이 행정처분에 대해 가 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아동"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 2. "출생등록"이란 출생의 사실을 출생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장)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출생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이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

- 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 ③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감독한다.
- 제6조(출생사실통보) ①「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의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 나. 모의 외국인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의 제출의무를 면한다.
- 제7조(출생등록) ①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신청서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아동의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한다. 이 경우 외국인아동은 출생등록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여야한다.
  - ② 출생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체류지
  - 2.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지(등록이 없는 경우는 의료기관 소재 지)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 4.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신청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자격
  - ③ 외국인아동의 성명은 부 또는 모의 국적 국가의 문자나 발음으로 표기하고 한글을 병기한다.
  - ④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따른 출생사실통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이 발행한 출생사실확인서
- 2.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4.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⑤ 제4항에 따른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지 관할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출생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신청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와 모의 혼인관계 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신청은 모가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등록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는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동거인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⑥ 신청의무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출생등록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등록)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신청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등록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1항의 최고기간 내 에 출생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라 신청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등록 확인, 출생등록 최고, 출생자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시·읍·면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출생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출생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외국인아동의 성명ㆍ성별
  - 2. 외국인아동의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 3.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출생등록번호
- 5. 기타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출생등록번호 부여, 출생등록부의 기록·보관 및 등록신청서류의 송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 제12조(출생등록사무 및 출생등록부의 관리) ①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 대법원장은 출생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출생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출생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 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 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출생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 등) 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 인아동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1 조에 따른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출생증명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출생등록부 기재사항의 정정) ① 출생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 ·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신청사건의 외국인아동 본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출생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사건 외국인아동 본인의 출생등록신청 수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제1항의 사실을 안 때에는 본인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통지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확정판결에 의하여 출생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

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출생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출생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부를 폐쇄한다.
  - 1. 외국인아동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2. 외국인아동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 자임이 확인된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 ③ 대한민국 외의 국가의 절차에 따라 출생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아동 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의 신청에 따라 출생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은 폐쇄된 출생등록부를 관리하며, 폐쇄된 출생등록부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16조(통보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출입 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외국인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는 제18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국적(국적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출생등록번호
- 2.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 다.
- 제19조(사망신고의 관할)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아동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에 따른다.
- 제20조(불복절차) ① 출생등록사건에 관하여 본인등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 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가정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가정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⑦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감독 조치)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거나 시정지시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

- 유로 출생등록부 등에 기록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한 사람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신청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록신청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 람
-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사람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준용) 이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22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부"는 "출생등록부"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출생등록신청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아동은 이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출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